

적성검사 불합격 기준

(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관련)

○ 적용분야: 계약직-장비차량 수송원

※ 채용 예정 직과 같은 기준의 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하여 유효기간 내(임용예정일 기준)에 있는 경우는 해당 적성검사 판정서로 인정

운전업무종사자들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

(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관련)

검사대상	검사주기	검사항목		불합격기준
		문답형 검사	반응형 검사	
장비차량 수송원	최초 검사	- 인성 -일반성격 -안전성향	- 주의력 -복합기능 -선택주의 - 인식 및 기억력 -시각변별 -공간지각 -작업기억 - 판단 및 행동력 -추론 -민첩성	-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- 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
	정기 검사	- 인성 -일반성격 -안전성향 -스트레스	- 주의력 -복합기능 -선택주의 - 인식 및 기억력 -시각변별 -공간지각 -작업기억 - 판단 및 행동력 -추론 -민첩성	-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-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(E등급)이 2개 이상인 사람
	특별 검사	- 인성 -일반성격 -안전성향 -스트레스	- 주의력 -복합기능 -선택주의 - 인식 및 기억력 -시각변별 -공간지각 -작업기억 - 판단 및 행동력 -추론 -민첩성	-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- 반응형 검사 항목 중 부적합(E등급)이 2개 이상인 사람

비고:

1.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한다.
2. 반응형 검사 점수 합계는 70점으로 한다. 다만,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사항목별 등급으로 평가한다.
3. 특별검사의 복합기능(운전) 및 시각변별(관제/신호) 검사는 시뮬레이터 검사기로 시행한다.
4. 안전성향검사는 전문의(정신건강의학) 진단결과로 대체 할 수 있으며,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일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재검사 결과를 최종적인 검사결과로 할 수 있다.